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1010008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1.04.01.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7.

www.lookoptics.co.kr

cwbak@lookoptics.co.kr

룩옵티컬 (Look Optical)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룩옵틱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16.

주식회사 룩옵틱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 3층(서초동, 서초월드오피스텔)

연 락 처 : TEL) 02-3016-8200 / FAX) 02-3016-8294

담당부서 : 법무팀 / TEL) 02-3016-8175 / FAX) 02-3016-829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룩옵틱스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8. 10. 23	1998. 10. 23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법인등록번호	110111-1598585	사업자등록번호		211-86-46712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허명효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기타 비상무이사	이현정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기타 비상무이사	이재규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강연호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기타 비상무이사	최용원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감사	구태형	룩옵티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서초월드오피스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허명효	02-3016-8200	02-3016-829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본부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룩옵티컬]이라 함)의 내용

가맹점사업자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룩옵티컬(Look Optical)	
상호	룩옵티컬 ○○점	
상표 (서비스표)		• 등록번호 : 제45-0039265호
		• 등록번호 : 제45-0039262호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첨 1 참조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4,091,357	48,657,626	35,433,731	41,361,095	1,583,454	235,790
2022년	77,970,234	55,529,101	22,441,133	36,418,972	-13,472,952	-12,973,334
2023년	42,829,252	19,448,523	23,380,729	69,369,105	6,229,211	27,308,217

2) 가맹본부의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과 관련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룩옵티컬 가맹사업 외에도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매출액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룩옵티컬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표상의 매출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본부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허명호	대표이사	2009.01. ~ 현재	(주)룩옵틱스 대표이사	업무총괄
	이현정	기타비상무이사	2009.03. ~ 현재	(주)룩옵틱스 기타비상무이사	이사
	이재규	기타비상무이사	2020.02. ~ 현재	(주)룩옵틱스 기타비상무이사	이사
	최용원	기타비상무이사	2024.04. ~ 현재	(주)룩옵틱스 기타비상무이사	이사
	강연호	사내이사	2021.07. ~ 현재	(주)룩옵틱스 사내이사	이사
	구태형	감사	2020.03. ~ 현재	(주)룩옵틱스 감사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4	29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상표서비스표		2011.03.09. 출원 2012.04.04. 등록	출원 제45-2011-00009 79 등록 제45-0039265	주식회사룩옵 틱스	2032.04.04.
상표서비스표		2011.06.16. 출원 2012.04.04 등록	출원 제45-2011-00025 97 등록 제45-0039262-00 00	주식회사룩옵 틱스	2032.04.0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가맹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가맹본부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침해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이미 특허청에 그 등록이 확정된 권리 이외에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해당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룩옵티컬]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1년 04월 01일

2. [룩옵티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룩옵틱스	룩옵티컬	허명효	2011.04.01.~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2층,3층 (서초동,서초월드오피스텔)

3. [룩옵티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룩옵티컬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안경	안경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룩옵티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1	51	-	53	53	-	51	51	-
서울	19	19	-	20	20	-	20	20	-
부산	2	2	-	3	3	-	3	3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2	2	-	2	2	-	2	2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20	20	-	20	20	-	19	19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2	2	-	2	2	-	1	1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룩옵티컬]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58	2	-	9	8	51
2022	51	2	-	-	4	53
2023	53	1	-	3	3	51

6. [룩옵티컬] 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룩옵티컬]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51	658,153	25,960	2,468,094	121,474	141,126	5,455	
서울	20	799,012	23,890	2,468,094	121,474	141,126	5,455	
부산	3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대전	2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경기	19	570,675	27,667	1,312,627	68,440	179,020	10,621	
강원	-	해당없음						-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위 [표]에 기재된 자료는 가맹점 전산 POS 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가맹점의 최초 개점일 및 연간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 상한과 하한 사이의 차액 및 지역별 편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출액은 가맹점별 위치 및 규모, 물품 및 용역 공급금액, 시장상황, 주변 여건,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기재 되어있는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가 올릴 수 있는 미래의 정확한 수입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매출액의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가맹본부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룩옵티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51	175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가맹본부에서 2023년도에 [룩옵티컬]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맹사업에 한정된 광고비 및 판촉비만을 정확히 산출하기 곤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액수에는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91,962	2,091,962	0	-
광고	TV, 신문, 잡지 등	2023. 1~12	1,154,120	1,154,120	0	-
판촉	사은품, 전단지 등		937,842	937,842	0	-

11. 가맹금 예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국민은행 또는 (주)신한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계좌번호	전화번호
국민은행	059437-04-005883	02-542-5191
신한은행	140-009-342523	02-558-2013

※ 별첨 "가맹금 예치 신청서" 참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을 가맹본부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식을 작성한 후 (주)국민은행 또는 (주)신한은행에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는 (주)국민은행 또는

(주)신한은행 전국영업점에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계좌를 수취한 후 해당 계좌로 가맹금을 입금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주)국민은행 또는 (주)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해당사항 없음

가맹본부와 가맹본부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룩옵티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외부 시설·설비·장비·소품 등의 종류와 형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의 개점까지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로 지급 소요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입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비용	해당사항 없음	-	-

1) 가입비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가입비	20,000~30,000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내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다만, 가맹사업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품 등을 외상공급 받거나 인테리어시설을 임대받는 등 가맹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 등의 대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가맹사업보증보험증권 제출,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근저당권 설정 기타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가입비	20,000~30,000

4) 가맹점사업자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타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비고
----	------	----	---------------	------	----------	----

총계	-	165,000	5,500	-	-	30평 (99.174㎡)
초도 공급 물품 안경테, 선글라스, 렌즈	가맹본부	60,000	2,000	• 물품 출고일 익월 15일	-	가맹점 철수 시 반품불가
인테리어시설, 집기 등	가맹본부, 협력업체 (수시변경)	105,000	3,500	• 공사업체 등 협 력 업 체 와 의 계약에 따름	-	최저가 입찰방식
필수장비 DID, UCC, 노트북, 프린터, 핸드스캐너 등	가맹본부 협력업체	-	165-	-	-	-
광학기기 육습기, 검안기, 세척기 등	가맹본부 협력업체	-	-	-	-	-

위 [표]의 금액은 30평(99.174㎡)을 기준으로 기존에 안경점이 아닌 점포에 가맹점을 신규개설하기 위한 기본 소요 비용으로 책정된 가맹본부 추정금액이며, 개별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의 위치와 규모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감리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가맹본부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필수장비와 광학기기는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나,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로부터 구매를 강제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구매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점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 동의 여부를 구함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브랜드 관리 및 운영 원칙에 대한 적합성 개별 판단

다만,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맹사업 희망자가 가맹본부에서 조사·분석 후 제안한 입지 등의 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새로운 입지를 재선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으로 인하여 가맹사업 희망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 추가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안경사 자격증을 보유할 것 - 만20세 이상일 것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좌동
종업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좌동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룩옵티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표]의 전산장비, 부자재 및 집기 등은 안경테, 선글라스, 렌즈 등 안경 관련 물품 및 용역을 유통 · 판매하는 [룩옵티컬] 가맹점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설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시설 · 설비 등이 공급 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개별 가맹점의 위치, 규모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한편, 가맹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제도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2.2%	익월 15일	해당없음	-	월 변동액
리스료	해당 없음	-	-	-	-	-
교육훈련비	해당 없음	-	-	-	-	-
POS 사용료	해당 없음	-	-	-	-	-
영업지역 보증금	해당 없음	-	-	-	-	-
재고관리 비용	해당 없음	-	-	-	-	-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	-	-	-	-
안경테, 렌즈 선글라스	가맹본부	별도	출고일 익월 15일	하자로 인한 반품	하자 통지 기간 도과	-
영업표지, 간판 등 변경	공사업체 (수시변경)	필요 시, 분담	-	외주계약에 따름	외주계약 체결/시행	협의 결정

POP, 현수막, 소품, 집기 등 교체/변경	공사업체 (수시변경)	필요 시, 분담	-	외주계약에 따름	외주계약 체결/시행	협의 결정
시설, 기기 교체/보수	공사업체 광학기기 공급업체 (수시변경)	필요 시, 분담	-	외주계약에 따름	외주계약 체결/시행	협의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공사업체 (수시변경)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참고			-
자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			-
광고/판촉비용	가맹본부 거래업체	V-9 참고				-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전체수수료의 50%	V-9 참고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기타 영업상황 등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수량 및 장부 재고수량 비교	분기당 1회	문의 :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 등에 대한 회계 검토 및 장부 조사	수시	문의 :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POS 운영	가맹점의 고객정보, 매출정보 등 POS 데이터베이스 제출/보고 의무	수시	문의 :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합니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때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 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 사업자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업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룩옵티컬]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맹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 양도, 담보제공 등의 형태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V-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한 경우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철거 내지 제거를 지체한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3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가맹점에 공급된 안경, 선글라스, 렌즈 등의 판매물품은 가맹점 탈퇴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에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채무는 별도의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때에는 연체된 금액의 연15%에 해당 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 하거나 설비,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선정한 지정업체 또는 협력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것인 만큼 가맹본부가 어떠한 강요, 압력을 행사하여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가맹사업 운영의 체계화·표준화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 운영을 위한 초도거래 및 기본적인 상품, 설비, 집기 및 부자재 등과 관련하여서는 일정 부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거래처로부터 이를 공급받아서 가맹사업을 영위 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룩옵티컬]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 등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이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록오피컬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록오피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의 연간거래 총액의 경우 추정치이며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록오피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1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위약벌(전월매출액의 10%) -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위약벌(전월매출액의 10%) -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위약벌(전월매출액의 10%)	-

가맹점사업자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 본부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모든 고객	안경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안경원 내에서 소매로 판매하여야 하고, 온라인이나 도매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1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 2회 위반 : 서면 시정 요구 -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안경, 선글라스	물품별 별도	가맹점 인터넷 웹 POS 공지	-
렌즈 및 부자재	물품별 별도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정한 소매가격표(권장소비자가격)에 따라 상품 등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매가격 변경 6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대상 상품 등의 목록과 판매할 가격,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판매가격의 적절성, 소비자 신뢰 훼손 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 가맹본부의 가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격 변경 승인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소비자가격과 다른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하는 방법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과도한 덤핑판매 및 이를 위한 광고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위작 또는 변작된 상품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 본부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관련 업종	룩옵티컬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매장 기준 반경 100m 단, 특수상권(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 복합몰)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하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협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협의 여부 회신 - 협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룩옵티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일반 안경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백화점, 아울렛, 복합몰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주)다비치안경체인, (주)케이비전안경체인, (주)안경매니저, (주)지앤디, (주)시호비전, (주)이노티 등	도수테, 선글라스	PB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세부품목이 다름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복합몰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도수테, 선글라스	도수테, 선글라스
일반안경원	-	도수테, 선글라스	PB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세부품목이 다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홈쇼핑	현대, 롯데, 신세계, cj오쇼핑	도수테, 선글라스	-
인터넷몰	GS SHOP, G마켓, 11번가, 하프클럽, 위메프, GS홈쇼핑, 무신사, 옥션, 롯데온, 신세계TV쇼핑, 티몬, 텐바이텐, 패션플러스, 스마트스토어 등	도수테, 선글라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9.8%	0%	0%	0.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록옵티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2) 계약 연장,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는 각종 대금지급의무를 1회 또는 일부라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1항 제1호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나 가맹본부의 기본정책 및 영업방침 등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1항 제2호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단,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제46조 제1항 제3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7조 제2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47조 제2항 제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7조 제2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7조 제2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7조 제2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7조 제2항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7조 제2항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7조 제2항 제8호
○ 가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 제2항 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서 정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중 개인사정 등으로 조기에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시 환매하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사항 없음	-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이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가맹본부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 예정일 45일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 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 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장 이전, 양도, 담보제공 또는 매각 및 영업 양도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영업양수인은 가입비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계약을 체결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영업양수인이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입비 지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업양도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도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명의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가맹점 운영을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하면 가맹계약은 당연히 종료하나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안경사인 경우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실종, 의사능력 제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 또는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상속인 등 권리자를 대행하여 긴급히 가맹점을 관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상속인에게 그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맹본부 상속사실 통지	신규교육 수료
대리행사	해당사항 없음	-	-	-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영업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가맹 본부에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관련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허가 신청 → 가맹본부 담당부서 검토 (시장조사 포함, 약 30일 가량 소요) → 경업 허가 여부 결정 → 통지 → 완료	문의 :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연중무휴	문의: 프랜차이즈사업팀 (02-3016-8161)

위 [표]에 기재된 영업시간은 일반 로드샵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의 운영 형태를 (ㄱ)로드샵, (ㄴ)백화점, (ㄷ)아울렛·할인점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백화점 및 아울렛·할인점에 입점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백화점 및 아울렛·할인점의 기본 영업시간에 따라 가맹점의 영업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 규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맹점사업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서면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별도 제한 없음	직접 근무	별도 제한 없음	가맹본부 사전 서면 승인

단, 대체 인력이 안경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경, 선글라스 등의 피팅, 검안, 조제·처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고객접대, 가맹점의 현상 관리·보존 및 유지 등 기본적인 영업보조행위에 한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프랜차이즈 사업팀	방문 사전통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프랜차이즈 사업팀	통지하지 않음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프랜차이즈 사업팀	방문 사전통지
POS 운영	담당자 방문 실사 → POS 자료 확인	수시	프랜차이즈 사업팀	방문 사전통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가맹본부는 [룩옵티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 등을 위한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전체 광고·홍보 행사 및 개별 판촉 행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개별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가맹본부의 관련 행사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행사	상품 또는 가맹브랜드 광고	50%	50%	POS 공고 → 가맹점 행사 참여 의견수렴 → 행사실시 → 정산	대중매체 광고
	상품 또는 가맹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75%	25%		
	가맹점 모집광고	100%	-		
판촉행사	할인행사	75~100%	0~25%	POS 공고 → 가맹점 행사 참여 의견수렴 → 행사실시 → 정산	-
	증정행사	50%	50%		-
	팸플렛 등 광고물	50%	50%		-
	멤버십할인	-	100%		-
	포인트 적립	-	100%		-
	모바일 상품권	50%	50%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홍보 및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홍보 및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광고·홍보 및 판촉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엄격한 절차나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로서는 대·내외적인 기업의 가치와 명성, 브랜드 가치 및 이미지의 제고, 상표권 및 영업권의 보호, 보존·유지 또는 향상, 기타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권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별 광고·홍보 및 판촉 활동의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하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이를 공개,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교육, 훈련 또는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의 관리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등이 담긴 관련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입비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금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호,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상품(초도상품 포함) 또는 용역을 무상 지원한 경우 그 상품 또는 용역의

통상 공급가액

2호,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상품대금, 가입비, 로열티 등 이 계약에 따른 채권을 감면해준 경우 그 감면금액

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임대료 지급유예 또는 면제조건으로 인테리어시설을 대여 받은 경우, 지급유예 또는 면제받은 총 임대료

4호,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한 위약금

[“가맹점 월평균매출액” 의 5% X 잔여 계약 개월 수]

※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은 해지일 직전 12개월(POS 기준으로 하며,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최초 개점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으로 계산하며, 정상적인 영업일이 20일 이상인 월만 계산에 산입합니다. 다만, 영업일이 1개월에 미달하면 일할 계산합니다.

※ “잔여 계약 개월 수”를 계산할 경우, 16일 이상 남은 달을 1개월로 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에게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호. 가맹점사업자의 과실로(법령위반, 바가지 등) 언론에 가맹브랜드가 부정적으로 보도되게 한 경우 : 전월 매출액의 10%

2호.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경우 : 전월 매출액의 10%

3호. POS 허위정보 입력 : 전월 매출액의 5%

4호.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본부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을 매장에 반입한 경우 : 전월 매출액의 10%

5호. 영업비밀 준수 의무 위반 : 가입비의 2배

6호. 경업금지의무 위반 : 가입비의 2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시설(비품 포함,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대여한 경우,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원인을 불문하고 이 계약이 종료한 날 인테리어 시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 시설(시설비 일부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잔존가(가맹본부 취득가 또는 부담액에서 내용연수 5년 기준으로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한 금액)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대가가 지급되면 대여시설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속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합계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1일	-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및 기타비용 입금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가맹금 예치	-가맹비 및 교육비 예치	계약서 작성 후 즉시	-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5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5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약 5일	
교육실시	-개점 전 교육 실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2일	-
오픈 전 점검	각종 인허가 종업원 모집 기타 오픈 준비 (가 오픈)	3일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

위 [표]에 따른 내용은 30평(99.174㎡) 규모의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시장상황 및 내·외부 여건 기타 가맹본부의 자체 점포 개발, 별도 임대차 계약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그 기간과 비용이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록옵티컬] 가맹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 가맹본부인원 : 5명 ○ 가맹점사업자 : 1명	분쟁조정위원회 소집 → 분쟁안 발의 → 가맹점사업자 의견청취 → 조정안 도출 → 가맹점사업자에 조정안 통지	가맹분쟁조정위원회 (문의:02-3016-8161)

다만,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02-3445-9898,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현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민사소송법상 소재지 관할 법원에 관한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 판매촉진에 관한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본부 (02)3016-8161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본부 (02)3016-816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룩옵티컬]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룩옵티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개점 전·후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 상품, 서비스, 브랜드, 기업문화 등 ○ 매장 관리/운영 및 POS/VAN 운용 등	이론교육 실습교육	가맹점 개점전	필수교육
수시 교육	○ 가맹점 관리/운영 등 ○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가 통보	개별교육 집단강의	별도 지정기한	필수교육
특별 교육	○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기본 정책, 영업 방침을 위반한 가맹점 사업자 ○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가 통보	개별교육 집단강의	별도 지정기한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룩옵티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최초 교육	1일	필요시 실비청구	
수시 교육	1일	필요시 실비청구	
특별 교육	1일	필요시 실비청구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소요기간의 증감 또는 가맹점 운영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간 합의로 교육·훈련의 횟수, 기간, 방식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 등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불참하거나 교육·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또는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가맹점 개설 지연, 가맹계약 해지, 기타 계약 갱신의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 (02-3016-816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금 예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간인 후 절취-----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 40 -